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11호 2013. 12. 23. (월)**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64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정선군 조례 제2365호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5
- 정선군 조례 제2366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7
- 정선군 조례 제2367호 정선군 농기계순화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364호

###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으로 별표 6과 같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1. 분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3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 2. 봉안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3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제7조제4항 중 “정선군하늘터”를 “정선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정선 하늘터”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군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여사망자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외자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50% 감면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6]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제2조 관련)

법 률 명	대 상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365호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찜질방·매주방·마을회관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정선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선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
- ③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은 「정선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에 규정한 등록 경로당 지원 보조금액의 1/2 이하로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366호

###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 및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2명 이내)하는 소속 군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갖춘 자(각 분야별 2명)
  3. 교통·복지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 해촉)**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중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은 담당으로 한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자격에 대한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

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 ④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지원하여야 한다.
-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⑦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⑧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및 임산부로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수요·운행 대수·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행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2. 관외 이용요금은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

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3.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① 군수는 강원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년 12월 23일

정선군 조례 제2367호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 을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의 운영”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 를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순회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 이라 한다)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 ②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정비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기계 이동순회 기술교육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술교육반은 농업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읍·면·리 등 자연부락 단위의 순회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기계 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를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리소” 를 “기술교육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술교육반은 기술지원 과장, 농업기계팀 담당, 농업기계 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원, 교육요원으로 편성한다.

제5조 본문 중 “수리소의 장은 수리” 를 “기술교육반의 장은 기술교육”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기계” 를 “농업기계” 로, “수리” 를 “기술교육” 으로 한다.

제6조 중 “수리 관리자가 수리” 를 “기술교육 관리자가 기술교육” 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교육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중 “조례는” 을 “조례의”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